

교원 초빙 공고

한국학중앙연구원(이하 연구원)은 한국 문화의 심층 연구 및 교육 등을 통하여 한국학을 진흥하기 위하여 1978년 6월 30일에 설립된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입니다. 한국학 및 한국문화에 대한 심층 연구와 교육을 담당할 교원을 다음과 같이 초빙하오니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4. 3. 26.

한국학중앙연구원장

- ※ 지원 서류 작성 시 '공고문, 초빙지원서 양식 등'을 확인 후 작성하셔야 합니다. 안내 사항 미숙지로 발생한 오류 및 불이익의 책임은 전적으로 지원자에게 있습니다. (지원 자격, 가점 및 우대 사항, 유의 사항 등 반드시 숙지)
- ※ 초빙지원서는 2024년 4월 1일(월) 9시부터 2024년 4월 15일(월) 17시까지 접수합니다.

1 초빙 분야 및 인원

학부	전공	초빙 분야	예정 인원	비고
인문학부	국어학·국문학(국문학)	해방 이후 한국문학(서사 및 비평)	1	
문화예술학부	음악학	동아시아비교음악	1	「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조의3(대학교원의 신규채용)에 의거 <u>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국악과</u> 학사 출신자 지원불가
문화예술학부	인문정보학·인문지리학(인문정보학)	한국문화 데이터 아카이브	1	
사회과학부	교육학	현대 한국교육/국제교육개발	1	

※ 초빙 분야별 중복 지원은 불가함.

2

임용 예정일: 2024년 9월 1일(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3

지원 자격: 다음 각 호 모두를 충족하여야 함.

- 관련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지원 마감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의 관련 분야 연구 실적이 300% 이상인 자.
 - ※ 연구실적은 출판된 학술저서(ISBN에 등록된 경우에 한함), 국내외 공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SCI<SCIE 포함>, SSCI, A&HCI 등), 박사학위 취득 논문에 한하여 인정하며, 저자 수에 따른 인정 환산율 등은 연구원 규정에 따름.
 - ※ 다만, 박사학위 취득 논문은 발표 기간에 제한 없이 100%로 인정함.
- 연구원 ‘인사 규정’ 제13조에서 정한 다음의 임용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 해당자
 -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 병역 기피자 또는 채용 신체검사 결과 부적합자
 - 연구원 징계에 의하여 면직되거나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 행위로 당연 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제1항에 따른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 제한 적용을 받는 자
 - 채용 비리로 직권면직, 파면 또는 해임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연구원이 지정한 날에 근무 시작이 가능한 자(2024. 9. 1. 예정)
- 연구원 ‘인사규정’ 제33조에서 정한 정년(65세)에 도달하지 않은 자
 - ※ 연구원 채용 시험에 지원하여 부정행위로 불합격 처리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지원할 수 없음.
 - ※ 지원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실이 임용 후 발견된 경우 「인사규정」 제28조제1항제9호에 따라 직권 면직 할 수 있음.

4

가점 및 우대 사항

- 가점 사항: 취업 지원 대상자(국가보훈대상자 등)^{주1)}
- 우대 사항: 장애인^{주2)}

주1) 취업 지원 대상자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등 개별 법률에서 정한 취업 지원 대상자를 말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국가보훈법) 제31조제3항에 의거

채용 공고상 **최소 모집 단위(채용 분야)의 최종 선발 예정 인원이 3인 이하인 경우 국가보훈법에 의한 가점 적용 합격자는 없음.** 단, 응시자의 수가 **선발 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가점을 적용한 점수로 평가함.**

주2) 장애인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르며,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시·군·구에서 교부한 장애인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 증명서 소지자, 지방보훈관서가 발급한 국가유공 상이 등급 확인서 또는 상이 등급이 기재된 국가유공자증명서 소지자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등록증 발급이 가능한 자를 말함.

5 제출 서류

1. 지원 서류 제출 시

※ **초빙지원서 등 모든 서류에 출신 지역, 성별, 생년, 연령, 가족 사항, 신체 조건 등 기재하지 말 것.**

※ **첨부된 소정 양식을 PDF파일이나 다른 형태로 변경하지 말 것.**

- 초빙지원서 1부(연구원 채용시스템 접속 후 입력)
- 연구실적심사 대상 연구실적물(300%)(5편 이내) 양식(소정 양식, 연구원 홈페이지 또는 연구원 채용시스템에서 다운받아 작성 후 첨부할 것) 1부

※ **지원 마감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출판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 연구실적 목록 (소정 양식, 연구원 홈페이지 또는 연구원 채용시스템에서 다운받아 작성 후 첨부할 것) 1부
- 강의 경력 내역서(소정 양식, 연구원 홈페이지 또는 연구원 채용시스템에서 다운받아 작성 후 첨부할 것) 1부
- 교육 및 연구 계획서(강의 담당 가능 과목 및 개발하고자 하는 과목과 중·단기 연구 계획 및 목표 등)(소정 양식, 연구원 홈페이지 또는 연구원 채용시스템에서 다운받아 작성 후 첨부할 것) 1부.
- 석사 및 박사학위 논문 국문 초록 각 1부(※ **외국어 논문 초록은 외국어 원본 및 국문 번역본을 반드시 함께 첨부할 것**)

· **파일명: 국문 논문의 경우) 홍길동-학위논문 초록(국문_원본)**

외국어 논문의 경우) 홍길동-학위논문 초록(외국어_원본)

홍길동-학위논문 초록(국문_번역본)

※ **석사 및 박사학위 논문 초록을 모두 제출해야함(석박사 통합과정 졸업자의**

경우 박사학위 논문 초록 제출)

2. 연구실적심사 시(기초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제출)

○ 연구실적심사 대상 연구실적물(300%)(5편 이내)

※ '연구실적심사 대상 연구실적물(300%)(5편 이내) 인정기준 관련 안내사항'을 필히 참고할 것

※ 지원 마감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출판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 공인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은 게재 학술지가 공인학술지임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심사 대상 논문으로 인정하지 않음.

※ 5편 이내의 연구실적은 지원자가 정한 우선순위에 따라 300%에 도달한 연구실적물까지만 심사함.

※ 연구실적 인정 범위 및 환산율: 「교원 임용 세칙」에 의함.

※ 외국어로 된 연구실적물은 A4 5매 이내로 요약한 국문 번역물을 반드시 함께 첨부할 것

- 전자파일(스캔본 또는 PDF파일) 각 1부: 채용시스템으로 제출

· 파일명: 예) 교원(해방 이후 한국문학-원본)(연구실적물 제목-홍길동)
교원(해방 이후 한국문학-블라인드)(연구실적물 제목-홍길동)

※ 연구실적물 파일은 출판내역 확인을 위한 원본 파일과 심사를 위한 블라인드 처리 파일 2종 모두 제출해야 함.

※ 블라인드 처리 연구실적물은 연구실적 심사를 위한 용도이므로 성명, 학교명, 학교 워터마크, 지도교수명, 논문 심사위원명을 블라인드 처리하여 제출할 것.(원본 연구실적물은 지원자의 연구실적물 확인용도이므로 '성명' 블라인드 처리 불필요)

※ 단, 파일 용량 초과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연구실적물 파일을 이메일로 제출 가능함.(연구실적물 탑재 기간 내 담당자와 사전 협의 후 제출)

○ 국내외 공인학술지 게재 증빙 서류(게재여부, 출판일자 등이 표시되어 있어야 함)(※예시: 한국학술지인용색인 인터넷 사이트 화면 캡처 파일 등) 각 1부 : 채용 시스템으로 제출

3. 면접심사 시(※ 출신 지역, 성별, 생년, 연령, 가족 사항, 사진 등 삭제)

※ 하단의 증빙 자료는 면접심사 당일 초빙지원서와 대조한 후 즉시 반환함.

○ 취업 지원 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장애인 증빙 서류(장애인증명서, 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중 택1)(해당자에 한함) 1부
- 학력(학사, 석사, 박사)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 ※ 외국 박사학위 취득자는 한국연구재단의 박사학위 신고필증 사본 제출
- 경력(재직) 증명서(초빙 지원서 및 강의 경력 내역서에 기재한 모든 경력) 각 1부
 - ※ 회사명, 근무 기간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경력(재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 기관폐업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 받기 어려운 경우, 경력증명서 외 4대보험자격 득실이력확인서* 등으로 보완가능
 - * 고용보험(피보험자격 내역서), 국민연금(가입이력 포함된 가입증명서), 건강보험(가입자 자격득실확인서), 산재보험(근로자 고용정보 확인서)

6 지원 서류 접수

- 접수 기간: 2024. 4. 1.(월) 09:00 ~ 4. 15.(월) 17:00(※ 한국 시간 기준)
※ 접수 마감 시간까지 반드시 최종 제출이 이루어져야 함.
- 접수 방법: 연구원 채용시스템(<https://aks.recruiter.co.kr>) 접속 후 입력

7 심사 절차

- 기초심사(5월 초순) → 연구실적심사(6월 초순) → 공개발표 및 면접심사(7월 초순)
 - ※ 상기 일정은 연구원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 공개발표심사와 면접심사는 병행하여 실시함.
 - ※ 심사는 심사 단계에 따라 구분하여 실시하며, 단계별 최종 합격자 및 불합격자에게 개별 통보 함.

8 기타 유의 사항

- 초빙 분야별 중복 지원은 불가하며, 1개의 분야에만 지원할 수 있음.(중복 지원 시 모든 분야의 지원사항을 무효로 함.)
- 음악학[동아시아비교음악]: 「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조의3(대학교원의 신규채용)에 의거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국악과 학사 출신자는 지원할 수 없음.
- 최초 2년 이내의 기간으로 임용하며, 계약 기간 동안의 업적 등을 연구원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재계약 임용 여부를 결정함.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연구원 관계 규정과 기준에 의함.
- 초빙 지원서 등 각종 양식은 연구원 채용시스템(<https://aks.recruiter.co.kr>) 접속 후 입력 및 첨부하되, 모든 서류에 출신 지역, 성별, 생년, 연령, 가족

사항, 신체 조건 등 블라인드 채용에 위배되는 사항은 기재하지 않음.(위반 시 심사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단, 연구원은 연구개발목적기관으로서 연구인력 채용 시 연구기관의 목적에 적합한 우수인재 확보를 위하여 교육부 「연구개발목적기관 블라인드 채용 개선안」(2023.7.)에 따라 일부 정보(학위취득기관<출신학교명>, 지도교수명, 논문의 교신공동저자명 등)를 수집·활용함.

- 지원 서류 중 일부를 제출하지 않거나 오류가 있는 경우 전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제출 기한 내에 제반 서류를 미제출한 경우 지원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처리함.
- 지원서 작성 시 교육 사항과 직무관련 경력 사항은 증명서 등을 통하여 증빙할 수 있는 사항만을 기재하여야 함.
- **영어 외의 외국어로 발급된 각종 증명서는 국문 번역물을 첨부하고 공증을 받아 제출하여야 함.**
- **지원 서류 접수 및 전형 단계별 증빙서류 제출 시 기재 착오,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이나 손해 등에 관한 모든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
- 지원 서류 등의 기재 내용이 허위로 작성되었을 경우 합격 취소 또는 채용 후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또한, 임용 후에도 지원 자격이나 연구실적 등 임용 요건에 하자가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전형 결과 임용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보수는 연구원 규정에 의거하여 산정하며, 연구원 복무규정 등에 따라 근무하게 됨.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5일간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이 경우 붙임 양식으로 이의신청서를 작성 후 본인 서명 또는 날인하여 스캔파일을 전자우편(aks@aks.ac.kr)으로 제출하여야 함. 이의신청 처리 예외사유가 아닌 경우에 한해 이의제기 내용을 검토하고 답변을 처리할 예정임.

[이의신청 처리 예외사유]

- 채용과 무관한 문의 및 질의사항 등
- 개인정보(응시자, 시험출제자, 평가관련자 등), 지적재산권(외부 출제기관) 등 타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
- 기타 상기 사유에 준하는 사항

-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이번 채용 응시자 중 최종 합격자가 아닌 응시자는 최종 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 이내에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작성 및 이메일 제출(aks@aks.ac.kr)을 통해 채용 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반환에 소요

되는 비용은 연구원이 부담함. 다만, 전자우편 또는 채용시스템으로 제출된 경우나 연구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는 반환 대상이 아니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연구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반환한 것으로 함.

연구원은 반환 청구를 대비하여 채용 서류를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4일간 보관하며 보관 기간이 만료된 채용 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지체없이 파기함. 다만,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공공기록물로 등록·관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절차를 준수하여 보존하고 폐기함.

- 인사 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채용 관련 인사 청탁자는 전형 대상에서 제외함.
- ‘초빙지원서’의 기재 내용이 아래 불합격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불합격 처리함.

구 분		불합격 조치 내용
초빙지원서	1.기본정보	- 응시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불이익 조치
 - ‘초빙지원서’, ‘연구실적심사 대상 연구실적물(300%)(5편 이내)’ 및 ‘강의 경력 내역서’의 아래 내용이 지원자가 제출한 증빙 서류 내용과 상이한 경우 최종 임용을 위한 교원 인사위원회에서 불이익 조치(합격 취소 등) 할 수 있음.

구 분		불이익 조치 내용
초빙지원서	2. 인적 사항	- 가점 사항 및 우대 사항(취업 지원 대상자, 장애인) 비대상자가 대상으로 기재한 경우 - 보훈 가점 비율을 실제보다 높게 기재한 경우
	4. 직무 관련 경력 사항	- 경력(재직)증명서에서 확인되지 않는 경력을 기재한 경우 - 근무 기간을 30일 이상 늘려 기재한 경우(※ 경력(재직)증명서 기준) - 회사명이 경력(재직)증명서 기재 내용과 상이한 경우
○ 연구실적심사 대상 연구 실적물(300%)(5편 이내)		- 게재지명 또는 저자 인원수, 제1저자 여부를 틀리게 기재한 경우
○ 강의 경력 내역서		- 강의 경력 내역이 증명서 기재 내용과 상이한 경우

- 기타 상세한 사항은 사무국 인사팀(전화 031-779-2776)으로 문의하시기 바람.

‘위 공고문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